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7. 3.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 2. 27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96. 9. 10)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 중 현)

가.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 등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시민편의 위주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제2조 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시간 단위 및 경형 자동차 2, 3, 4급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제4조(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에 납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
 - 월 정기권에서 주간은 3급지에 변동이 없으나 4급지는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야간에는 3급지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50% 하향조정된 것이며,
- 제4조(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는 2항을 신설하여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에 납부하고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은 당초 기존 조례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는 없어지고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한 전용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량에 대한 사용범위를 비롯한 3개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는 민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3, 4급지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 제13조(주차시간 단위)는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차장 시간단위를 최초 30분 단위를 초과할 때 현행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1 ~ 2분 초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 제15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4호에 의거 주차장내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규모는 주차장 면적의 10%에서 설치하도록 한 것을 20% 범위까지 시설할 수 있도록 규척으로 완화시켰으며,
- 제4장 부설주차장으로서 종전의 4장은 용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용자란 제5장으로 바뀌면서 조례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부설주차장 시설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규정이며,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는 부설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다는 규정입니다.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사용중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코자 할 경우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주차시간 단위)
 - 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
- 제15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확대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일반이용 신고, 일반이용 폐지(중지) 신고,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신설
- 제21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월 정기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3. 専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유재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므로 요금체계의 형평을 기하며, 또한 그 동안 부설주차장을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설치 허가 및 관리하였으나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 조례에 적용하였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므로 구 조례로 정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항은 주차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기존의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급지는 변동이 없으며, 3, 4급지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노상주차장 주차시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까지는 3급지가 200원, 4급지가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10분이 초과될 때마다 200원, 100원을 적용하고 월 정기권은 주간에 3급지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시 1, 2급지는 변동이 없으나, 3급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4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30분 초과시 3급지는 50원이 인상되었으며,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는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하여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고,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 급지 구분에 따라 무상사용의 권한을 월 정기주차권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 審議結果: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97. 2.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 등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제2조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시간 단위 및 경형 자동차 2, 3, 4급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제4조(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에 납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
- 제13조(주차시간 단위)
 - 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
- 제15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확대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일반이용 신고, 일반이용 폐지(중지) 신고,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신설
-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월 정기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주차장법
- 조례개정(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노상주차장” 다음에 “주차요금 및”을 삽입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 ②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 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목중 “공용”을 “사용”으로 하고 본문중 “공용”을 “사용”으로 “공용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며 “공고하거나”를 삭제한다.

제12조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기관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 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관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15분”을 “10분”으로 한다.

제4장(제15조 내지 18조)을 제5장(22조 내지 25조)으로 하고 제15조 및 제4장(제16조 내지 21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써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① 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이상일 것)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 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	월 정 기 권		1 회 주 차		월 정 기 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차권 (야간에 한함)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 간	야 간
1급지	3천원	2천원	2천원	5천원	-	-	2천400원	800원	25만원	10만원
2급지	1천500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500원	500원	18만원	6만원
3급지	8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	500원	200원	4만원	2만원
4급지	3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300원	100원	3만원	2만원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

<별표1> 비고란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자동차(800cc 이하)에 대하여 2, 3, 4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제5조제3항 관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용</div> <div style="text-align: center;">P</div> </div>	300MM
<p>주 차 장 이 용 안 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재료 : 알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문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 표시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부 설 주 차 장 일 반 이 용 신 고 서				처 리 기 한
				5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태	
부설주차장	⑦위 치		⑧규 모	(대 m ²)
	⑨이용예정일		⑩	
				수 수 료
				없 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 구비서류 : 1. 주차시설 배치계획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200분의 1도 이상)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구 청 장)	비 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고 서 작 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교 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 (대 장 확 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 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 고 필 증 작 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수대장 등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현장확인 병행</div>

[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제2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중지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지			처 리 기 한 5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태	
부설주차장	⑦위 치		⑧규 모	(대 m')
	⑨공용신고번호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 중지 시설 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 폐지 시설 규모		대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⑬ 이용 중지 또는 폐지 사유				
				수 수 료
				없 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	NO
6cm	<p>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위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 이용 주차장 :
↓	<p>영 등 포 구 청 장 (인)</p>

9cm

← 글씨 - 검정색 →

(뒷면)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구 청 장)	비 고
<div data-bbox="256 712 579 79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신 고 서 작 성</div> <div data-bbox="406 862 422 891" style="font-size: 24px;">↑</div> <div data-bbox="256 1391 579 147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교 부</div>	<div data-bbox="638 712 960 79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접 수</div> <div data-bbox="790 862 805 891" style="font-size: 24px;">↓</div> <div data-bbox="638 943 960 10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검 토 (대 장 확 인)</div> <div data-bbox="790 1086 805 1115" style="font-size: 24px;">↓</div> <div data-bbox="638 1182 960 126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결 재</div> <div data-bbox="790 1332 805 1361" style="font-size: 24px;">↓</div> <div data-bbox="638 1391 960 147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 고 필 증 작 성</div>	<div data-bbox="1016 712 1339 79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접수대장 등재</div> <div data-bbox="1016 943 1339 10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현장확인 병행</div>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 (생략)</p> <p>②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u>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u></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u>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u></p>	<p>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p> <p>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p> <p>② 신설</p>	<p>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p> <p>① (현행 제4조 본문과 같음)</p> <p>② 제1항2호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u>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u></p>	<p>제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p> <p><u>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p> <p>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u>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u></p> <p>② 노상주차장에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u>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u>별지 4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용의 제한)</p> <p>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u>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공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u></p>	<p>제9조(사용의 제한)</p> <p>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u>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u></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 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p> <p>(신설)</p> <p>(신설)</p>	<p>..... 하되, 3, 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한다.</p>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p> <p>제4장 부설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 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p>

현행	개정안
	<p>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200분의1 이상일 것)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중지, 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p> <p>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p> <p>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노외주</p>

현행	개정안
<p>제4장(용자) 제15조 내지 제18조(생략) ① ~ ② (생략) <별표1> 주차요금표 (따로붙임) 별표1의 1 ~ 6 (생략) 별표1의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자동차(800cc)에 대하여 <u>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p>차장·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장 용자 제22조 내지 25조(현행 제15조 내지 제18조와 같음) <별표1> 주차요금표 (따로붙임) 별표1의 1 ~ 6 (생략) 별표1의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자동차(800cc)에 대하여 2, 3, 4급지 주차장의 경우 <u>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항 별표 주차요금

○ 현행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 회 주 차		월 정 기 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5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5분	주 간	야 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	-	1천600원	800원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원	500원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	3천원	4만원	-	300원	150원	4만원	4만원
4급지	200원	100원	-	2천원	4만원	4만원	200원	100원	2만원	2만원

○ 개정안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 회 주 차		월 정 기 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 간	야 간
1급지	3천원	2천원	2천원	5천원	-	-	2천400원	800원	25만원	10만원
2급지	1천500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500원	500원	18만원	6만원
3급지	8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	500원	200원	4만원	2만원
4급지	3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300원	100원	3만원	2만원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